

계룡시지명위원회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공무원
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 이상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충청남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⑤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,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제3조 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
2.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
3.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

제5조 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지명의 조사)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,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)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.

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

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, 지명등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.

제7조 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지명의 심의·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 (실비보상)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
4.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
5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0조 (운영규정)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